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II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환산기준에 관한 사항

제3조 기준통화

제4조 환산기준일

제5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

제6조 원화고정납입옵션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4관 기타사항 등

제8조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 II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 및 그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이하 '부가특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등에 대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를 대한민국 통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환산하여 원화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환산기준일: 보험료 등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 기타 계약 관련 내용
 - 추가납입보험료: 달러유니버설특약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특약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를 제외한 부가특약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 환산기준 관련 용어
 -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회사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주거래은행"이라 합니다)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고시환율 예시】

주거래은행 고시환율						특약적용환율
고시환율	매매기준율	현찰		송금 (전신환)		납입기준환율
		살 때	팔 때	보낼 때 (전신환매도)	받을 때 (전신환매입)	
US \$	1,150.50	1,170.63	1,130.37	1,161.70	1,139.30	1,150.50 ~ 1,161.70

회사는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의 범위에서 납입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해당 환산기준일의 매매기준율은 1,150.50 원이며

전신환매도율은 1,161.70 원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150.50 원과 1,161.70 원 범위에서
납입기준환율을 정하게 됩니다.

【전신환매도율(Telegraphic Transfer Selling rate)】

전신을 이용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서 은행이 송금 상대방 통화로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며, 통상 고객입장에서 전신환 송금환율(보낼 때)로
표기됩니다.

【매매기준율】

외국환은행이 고객과의 거래에서 적용하는 각종 환율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중심환율(기준환율)을 말합니다.

제 2 관 환산기준에 관한 사항

제3조 [기준통화]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기준통화는 미화로써 보험료 등의 납입은 미화로 이루어집니다. 단,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 및 부가특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산기준일]

보험료 등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의 납입형태는 ‘납입일 -
제 1 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단, 그 날이 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 1 회 보험료		계약일 - 제 1 영업일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 2 영업일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자동이체 이외)	납입일 - 제 1 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 2 영업일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이외)	추가납입신청일 + 제 1 영업일

(주 1)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추가납입신청 후 제 2 영업일에 납입됩니다.

(주 2) 제 6 조 [원화고정납입옵션]에 따라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한 경우 신청시점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환산기준일은 ‘신청일 - 제 1 영업일’로 합니다. 또한, 고정납입보험료의 납입시에는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을 따릅니다.

【예시】

달력: 7 월 1 일(영업일), 7 월 2 일(영업일), 7 월 3 일(공휴일), 7 월 4 일(영업일), 7 월 5 일(영업일)

(1) 제 1 회 보험료 환산기준일:

계약일	환산기준일
7 월 3 일	7 월 2 일
7 월 4 일	7 월 2 일

(2) 자동이체를 통한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

자동이체일	환산기준일
7 월 4 일	7 월 1 일
7 월 5 일	7 월 2 일

(3)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한 제 2 회 이후의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환산기준일:

납입일	환산기준일
7 월 4 일	7 월 2 일
7 월 5 일	7 월 4 일

(4)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한 추가납입보험료 환산기준일:

추가납입 신청일	환산기준일
7 월 1 일	7 월 2 일
7 월 2 일	7 월 4 일

제5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

보험료 등의 납입은 납입 시점에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원화 또는 미화로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원화로 납입을 원할 경우 회사는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예시】

달력(일자)	7 월 1 일 (영업일)	7 월 2 일 (영업일)	7 월 3 일 (공휴일)	7 월 4 일 (영업일)	7 월 5 일 (영업일)
납입기준환율 (US \$1)	1,130 원	1,120 원	-	1,125 원	1,115 원

(1) 주계약을 7 월 4 일에 가입(계약), 보험료가 US \$100 인 경우

⇒ 제 1 회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계약일 - 제 1 영업일’이므로 7 월 2 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US \$100 \times 1,120 = 11 \text{ 만 } 2 \text{ 천원}$ 을 제 1 회 보험료로 납입

(2) 7 월 5 일에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보험료가 US \$100 인 경우

⇒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자동이체일 - 제 2 영업일’이므로 7 월 2 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US \$100 \times 1,120 = 11 \text{ 만 } 2 \text{ 천원}$ 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

(3) 7 월 5 일에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이외), 보험료가 US \$100 인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납입일 - 제 1 영업일’이므로 7 월 4 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US \$100 \times 1,125 = 11 \text{ 만 } 2 \text{ 천 } 5 \text{ 백원}$ 을 납입

(4) 7 월 2 일에 추가납입보험료(자동이체 이외) US \$100 을 추가납입 신청한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추가납입신청일 + 제 1 영업일’이므로 7 월 4 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US \$100 \times 1,125 = 11 \text{ 만 } 2 \text{ 천 } 5 \text{ 백원}$ 을 ‘추가납입신청일 + 제 2 영업일’인 7 월 5 일에 납입

제6조 [원화고정납입옵션]

- (1) 이 특약 및 ‘달러유니버설특약’이 모두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옵션을 신청한 경우 신청시점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0%~150% 중 계약자가 선택한 고정된 원화(이하 ‘고정납입보험료’라 합니다)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천원단위). 이 때 신청시점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는 제 5 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에서 정한 원화환산비율을 따릅니다.
- (2) 고정납입보험료에서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로 하며, 제 5 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에서 정한 원화환산비율에 따라 미화로 환산되고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납입시 적용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환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 (3)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환율변동으로 인해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되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없습니다.
- (4) 이 옵션이 부가된 계약은 계약자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봅니다.
 1. 고정납입보험료가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보다 클 때: 고정납입보험료
 2. 고정납입보험료가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보다 작을 때: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
- (5) 계약자는 옵션 신청 후 언제든지 원화고정납입옵션의 해지 및 고정납입보험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원화고정납입옵션은 계약자의 신청없이 옵션해지됩니다.
 1. 달러유니버설특약 약관에서 정하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제 4 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3. 이 옵션이 부가된 계약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4. 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미화로 신청하는 경우

【원화고정납입옵션 예시】

- (1) 원화고정납입옵션을 신청 시 고정납입보험료 선택 범위
(주계약 보험료: US \$100, 옵션 신청일 - 제 1 영업일 납입기준환율: US \$1=1,130 원 가정)
 $US \$100 \times 100\% \times 1,130 = 113,000$ 원, $US \$100 \times 150\% \times 1,130 = 169,500$ 원
⇒ 113,000 원과 169,500 원 사이에서 천원단위로 선택
- (2) 추가납입보험료 계산
(주계약 보험료: US \$100, 특약 보험료: US \$10, 고정납입보험료 120,000 원, 해당 회차 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US \$1=1,000 원 가정)
 $120,000 / 1,000 = US \$120$
⇒ $US \$120 - US \110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 $US \$10$ 를 추가납입보험료로 함(환율에 따라 변동)
- (3) 원화환산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가 고정납입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주계약 보험료: US \$100, 특약 보험료: US \$10, 고정납입보험료 120,000 원, 해당 회차 보험료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 US \$1=1,500 원 가정)
 $120,000 / 1,500 = US \$80$
⇒ $US \$110$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가 고정납입보험료($120,000 = US \$80$)를 초과하므로, $US \$110$ 의 원화환산보험료($US \$110 \times 1,500 = 165,000$ 원)를 해당 회차 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함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7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1)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2)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 관 기타사항 등

제8조 [보험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부가특약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시 제 5 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미화로 돌려드립니다.
1. 주계약 및 부가특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
2. 주계약 및 부가특약 약관에서 정한 청약의 철회
 3. 주계약 및 부가특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취소
 4.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1 회분의 반환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보험료 1 회분의 반환】

보험료의 납입이 중복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 (2)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부가특약의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5 조 [원화환산비율의 적용]에서 환산되어 보험료로 납입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받은 금액으로 하며,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드립니다.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